

2017년도 동화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4. 17.(월) ~ 4. 20.(목), 4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 외 4명
- 대상기간 : 2015. 4. 27. ~ 2017. 4. 20.

2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2	6	16	17/3,900	4/161	12/3,735	1/4	
원처분	9	4	5	4/161	4/161	-	-	훈계 1 주의 2
현지처분	13	2	11	13/3,739	-	12/3,735	1/4	

※ 회수 : 공사비 과다 집행, 농지전용신고필지 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

※ 추징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지방세 미부과,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미징수

3 지적사항

원 처 분

1. 상시학습교육과정 이수자 이수시간 관리 부적정(시정)

- ○○6급 ○○○
 - 2015. 3.12. 자원봉사자 시스템관리자 교육이수(3시간) : 이중등록
- ○○○○7급 ○○○
 - 2016. 9.20~9.22.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20시간) : 이중등록

2.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부적정(주의)

-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업무와 무관한 ●◎★용 피복 15벌과 운동화 2켤레 구입 1,187천원 집행

3.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동화면 ◆□리 안길포장공사 준공검사 소홀
- 설계상 : H=2.1M, L=5M → 현장점검결과 : H=1.8M, L=5M

4.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점검 소홀(주의)

- 개발행위허가 신청외 토지 불법사용
 - ① 동화면 ◆◎리 000-6번지 나○○
: 지적경계선 ~ 웬스 이격거리(6m) 위반
-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소홀
 - ② 동화면 ◎◇리 000-5번지 서○○외 1명
: 개발행위허가 외 석축 쌓기 물량 증가

5. 효도권 지급 소홀(주의)

- 2015년 : 4명 / 24매, 1월 지연
- 2016년 : 5명 / 30매, 1월 지연

6.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주의)

- 2015년 : 4명, 42매 미지급
- 2016년 : 5명, 48매 미지급

7.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미만) 사후관리 소홀(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거 3천만원미만 지원사업에 대해 사후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비치 등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책임자를 미지정 운영하고 있음.
 - 사업기간 : 2013년, 2016년
 - 사업대상 : 5개분야 39명
 - 사업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다목적소형농기계 등

8. 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 소홀(시정)

○ 농지전용 신고농지 3건(3명) 직불금 지급 : 환수액 42,120원

신청인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	전용면적 (㎡)	전용목적	직불금수량		환수액	비고
								연도	금액		
계	3명				3,340	856			42,120	42,120	
이○○	동화면 ○○○○길00	●◎	000-2	전	1,531	197	농업용 창고	2015 2016	7,880 7,880	15,760	
동○○리 ○○회	동○○리 ○○회	○●	000-31	전	1,358	208	마을회관	2016	8,320	8,320	
박○○	황룡면 ○○○○길00	◇◆	000-4	전	451	451	농업용 창고	2016	18,040	18,040	

9. 민원 처리 부적정(주의)

민원인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기한	수정일자 (처리일자)	부적정내용
계					18건
오○○	2015.5.8	전입신고	2015.5.8	2015.5.11	지연처리
박○○	2016.9.13	가설건축물준치기간연장신고	2016.9.21	2016.9.21 (2016.9.22)	민원처리 날짜수정 (사실상 지연처리 → 기한내 처리로 수정)
동○○업	2016.10.1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6.10.14	2016.10.14 (2016.10.17)	
동○○업	2016.10.1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6.10.14	2016.10.14 (2016.10.17)	
김○○	2016.10.2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6.10.31	2016.10.31 (2016.11.1)	
박○○	2016.4.5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	2016.4.5	2016.4.5 (2016.4.6)	
문○○	2015.5.1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5.5.12	2015.5.12	결재문서없이 처리
조○○	2015.5.2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2015.5.27	2015.5.26 (2015.5.27.)	결재 진행중 완료처리 (3건 지연처리)
조○○	2015.5.2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5.5.27	2015.5.26 (2015.5.27.)	
나○○	2015.5.2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5.5.27	2015.5.26 (2015.5.27.)	
박○○	2015.6.1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2015.6.12	2015.6.11 (2015.6.12.)	
원○○	2015.10.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2015.10.6	2015.10.5 (2015.10.6.)	
박○○	2016.4.5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	2016.4.5	2016.4.5 (2016.4.6.)	
남○○	2016.4.18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	2016.4.19	2016.4.18 (2016.4.19.)	
조○○	2016.10.1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6.10.13	2016.10.13 (2016.10.14.)	
조○○	2016.10.13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2016.10.13	2016.10.13 (2016.10.14.)	
곽○○	2017.2.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7.2.8	2017.2.7 (2017.2.8.)	
곽○○	2017.2.2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7.2.23	2017.2.22 (2017.2.23.)	

현 지 처 분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2015. 6. 1. 꽃묘식재 및 사후관리용 각종 자재를 시설비에서 집행
 - 호미, 외낫, 피사줄, 장갑 등 9종 962천원
- 2015.12. 1. 옐로우시티조성 추진에 따른 물품을 시설비에서 집행
 - 전정가위, 전정톱, 엔진톱 등 6종 764천원
- 2016. 6.30. 옐로우시티조성 추진에 따른 비료 및 물품을 시설비에서 집행
 - 호미, 스프링클러, 장갑 등 3종 164천원

2. 이장활동수당 지급일 부적정(주의)

- 이장 월정수당을 매월 4,000천원 지급(20명, 각 200천원)하면서 2016.7.~2017. 3월까지 5회에 걸쳐 공무원 보수지급일과 다르게 지급

3.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및 지방세 부과현황 점검(시정)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도과
 - 동화면 ◆◎리 003번지 정○○ 외 12건
- 지방세(취득세) 미부과
 - 동화면 ◎◇리 000-9번지 외 13건

4. 소액수의계약 및 대가지급 문서 작성 소홀(주의)

- 소액수의계약 및 대가지급 문서 작성 소홀 : 총 13건
 - 착공계, 준공계, 청구서, 청렴이행각서 등 접수문서 미등록
 -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양식 임의변경 사용
 -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기재사항 미작성
 - 1면(앞면)에는 발의, 원인행위부기재, 계약, 적요, 금액 등을 기재하고
 - 2면(뒷면)에는 공사(용역)명세서 및 승락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나,
 - 승락사항(착공일자와 준공일자)을 누락함에 따라 준공일자 확인불가.

5.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주의)

- 대상자 : 유○○
-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나 증빙서류에 의한 급여점검 미실시

6.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 : 지급지연 17회(주의)

- 2015년 8회, 2016년 8회, 2017년 1회

7.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추진 소홀 : 10명(주의)

- 2015년 10명에 대한 방문상담 미실시
- 2017년 계획수립 지연 (수립기한 1.31일)

8.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주의)

- 학자금 신청시 추가자료 제출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등 미첨부) 및 거주사항, 영농규모 등을 매 분기별 재확인하지 않고 지급

9. 농업보조사업 집행업무 추진 미흡(주의)

- 농업보조금 집행업무 추진시 서류 미비 : 10개사업, 30명
 -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조서(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등 누락), 보조금 정산서 일부 누락, 전·중·후 사진대지 미첨부 등 농업보조사업 집행업무 소홀

10.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시정)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소홀 및 지연과태료 부과 부적정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신청기간 잘못고지 현황

연번	출생년월	인원	신청기간	발급통지일	통지방법	비 고
1	'99. 4월	4	'16.04.01~'17.03.31	'16.03.30	등기우편	신청기간 잘못고지
2	'99. 5월	1	'16.05.01~'17.04.31	'16.04.28	〃	

- 신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지연과태료 부과 부적정 : 1건, 4,000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수수료 미부과	수수료 면제 사유				
			훼손	보완기능추가	용모변경	성명변경	기타
계	27	2	16	1	3	3	2
2015년도	14	2	6	1	1	3	1
2016년도	9	-	6	-	2	-	1
2017년도	4	-	4	-	-	-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적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동의 후 등기부등본 등 열람 후 발급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35	11	13	11	

11.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 및 결손처리 부적정(주의)

- 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
-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지연 납입 : 15건, 547,600원
-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결손금액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 34건, 43,700원
- 증지수수료 지연 납입 및 결손처리 부적정 내역 (단위 : 건, 원)

내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연납입	15	547,600	1	20,200	12	428,300	2	99,100	
결손금액(증빙자료 미첨부)	34	43,700	4	3,200	30	40,500	-	-	

12. 전출 인감이송기간 미준수(주의)

-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신증명청에 이송
- 인감이송기간 미준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이 송 현 황			비고
	계	3일 이내	3일 초과	
계	250	189	61	
2015년도	109	89	20	
2016년도	105	88	17	
2017년도	36	12	24	

13.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사실확인 및 대원명부 통지 소홀(주의)

- 민방위대원 편성에 따른 이장 사실확인 및 임무부여 등 통지 소홀
- 민방위대원 편성 현황(2015~2017년) (단위

연도별	대수	대원명부	신규편성	제외	비고
계	23	293	19	29	
2015년도	9	102	10	13	
2016년도	9	99	4	13	
2017년도	5	92	5	3	

2017년도 동화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반환
계		22건	6	16	17/3,900	4/161	12/3,735	1/4
1	원 처 분	상시학습교육과정 이수자 이수시간 관리 부적정	○					
2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부적정		○				
3		공사감독 소홀	○		1/119	1/119		
4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점검 소홀		○				
5		효도권 지급 소홀		○				
6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				
7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8		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 소홀	○		3/42	3/42		
9		민원 처리 부적정		○				
1	현 지 처 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2		이장활동수당 지급일 부적정		○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지방세 부과 소홀	○		10/3,725		10/3,725	
4		수의계약 업무 소홀		○				
5		의사 무능력자(미약자) 급여 관리 소홀		○				
6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 추진 소홀		○				
7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추진 소홀		○				
8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		○				
9		농업보조사업 집행업무 추진 미흡		○				
10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	○		3/14		2/10	1/4
11		인증가용 증자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 및 결손처리 부적정		○				
12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		○				
13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사실확인 및 대원명부 통지 소홀		○				

처 분 지 시 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동화면	2017	시 정			

제목 : 상시학습교육과정 이수자 이수시간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78호) 및 『장성군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운영계획』에 따르면 상시학습 이수실적 입력은 공공·민간교육훈련 기관에서 통보된 교육훈련과 사이버교육 등은 총무과에서 일괄 실적 등록하고, 기관주관교육과 워크샵 등은 개인별 실적 신청 후 부서 서무담당자의 실적상신과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분기별로 교육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교육훈련 실적을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즉시 입력 내용삭제 및 부정입력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표1】** 과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 이수자를 이중등록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다.

【표1】 상시학습 교육이수자 이중등록관리 현황

직급	성명	교육기간	인정시간	제 목	비 고
○○○급	김○○	2015. 4. 7~ 2015. 4. 7	3	2015상반기 ★○봉사시스템 관리자 교육 참석	삭제
“	김○○	2015. 3.12~ 2015. 3.12	3	2015상반기 ★○봉사시스템 관리자 교육	존치
○○○급	김○○	2016. 9.20~ 2016. 9.22	20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	존치
“	김○○	2016. 9.20~ 2016. 9.22	20	2016년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	삭제

[처분지시]

① 총무과에서는 2명에 대해 이중 등록된 교육실적(23시간)을 삭제하고 부정입력 관리기준에 따라 각각 20시간씩 감축하시기 바라며,

※ 총무과-3798(2015. 3. 11)호 및 총무과-3874(2016. 2. 29)

② 앞으로는 상시학습 운영상황 점검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동화면	2017	주 의			주 의

제목 :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배부계획』(경관도시과-15415, 2016.11.4.)에 따르면 관리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안내 입간판 정비, 경계표석 설치·보수 및 단속장비 구입 등 경상 경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표1】 과 같이 201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용 피복 15벌과 운동화 2켤레를 구입하면서, 세출예산 집행품의서에 수량만 기재하고 지급대상자 명단을 누락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자는 3명(면장, 총무담당, 담당자)인데도 업무와 무관한 직원 12명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표1】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구입처	구입품목	수량	구입금액	비고
계	3개소		17개	1,187	
2016.12.02	(주)○○◇◆ 수완점	유니섹스 베스트	12벌	708	
2016.12.05	(주)○○◇◆ 수완점	유니섹스 베스트	3벌	177	
2016.12.13	■△야크	운동화	1켤레	191	
	머◆	운동화	1켤레	111	

[처분지시]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동화면	2017	시 정	회 수	119,000	훈 계

제목 : 공사감독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건설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 관련 『건설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서』 제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관련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므로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지방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이행중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표1】 과 같이 벽높이가 설계상 h=2.1m, L=5m로 반영되었으나, 현지확인결과 h=1.8m, L=5m로 시공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하여 이로 인해 제경비 포함 119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공사비 과다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도급액	공사기간	미시공량		시공사	비고
			수량	회수액		
●◇리 안길포장공사	6,252	2016.6.3. ~2016.7.28.	15m ² (h=0.3m L=5m)	119	◆◎개발	

[처분지시]

과다 집행한 119천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동화면	2017	주 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점검 소홀

[위법·부당 내역]

- 동화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당초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제140조(벌칙)규정에 의거 동화면에서는 위임 소관에 속하는 1,000㎡ 이내 토지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면에서는 【표1】 과 같이 위와 같이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현황

(단위 : 천원)

허 가 일	위 치	허가면적	목 적	불법행위 면적	불법행위 내용	비 고
2014.6.30.	동화면 ●◇리 000-5	646㎡	단독주택 신축부지 조성	80㎡	화단조성 석축쌓기	L=50m H=1.6m
2016.11.25.	동화면 ■★리 000-6	99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6m	지적경계 선~웁스 이격거리 임의조정	

[처분지시]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동화면	2017	주 의			

제목 : 효도권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동화면에서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도권을 지원하고 있다.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원기준으로 65세 나이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전입자가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이용권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이용권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표1】 과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효도권 이용권 지급대상중 연령도래자 9명(54매) 대하여 전입 다음달에 지급하지 않고 1월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1】 효도권 지급 지연대상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추가 지급사유	지급 대상월	실제 지급월	지급매수	지급월	비고
계	9명						54		
1	박○○	**0707	●◎로 00	생일 도래자	2015.08	2015.09	6	1월지연	
2	권○○	**0710	★○로 000-19	“	2015.08	2015.09	6	1월지연	
3	박○○	**0722	◆◎길 00-11	“	2015.08	2015.09	6	1월지연	
4	송○○	**0730	□▲로 000	“	2015.08	2015.09	6	1월지연	
5	이○○	**0404	구★○●길 00	“	2016.05	2016.06	6	1월지연	
6	백○○	**0420	신☆○◎길 0-00	“	2016.05	2016.06	6	1월지연	
7	이○○	**0409	구★○●길 00-0	“	2016.05	2016.06	6	1월지연	
8	강○○	**0418	동◎○●길 00	“	2016.05	2016.06	6	1월지연	
9	장○○	**0430	만☆☆길 00	“	2016.05	2016.06	6	1월지연	

[처분지시]

앞으로는 효도권 지급시 관련규정에 따른 지급시기 및 대상을 명확히 준수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동화면	2017	주 의			

제목 :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8조에 의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일 반용 쓰레기봉투를 1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지급하고 1인가구는 60리 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급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현황 및 대상자 거주여부 등을 확 인하여 공급기준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 동화면에서는 【표1】 과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급자로 추가 선정된 대상자 9명(20리터 90매)에게 다음분기 등 쓰레기봉투 지급시 과소 지급하였거나 지급을 누락하는 등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 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수급자 쓰레기봉투 과소 및 미지급 현황

연번	성명	주소	가구원	수급자 추가 책정일	지급일시	지급현황		미지급 매수
						적정 매수	지급 매수	
계								90
1	임○○	◎○로 000	2	'15.8.17	'15. 9.18	15	9	6
2	나○○	◎○로 000	1	'15.9.8	“	12	0	12
3	이○○	★○●을길00	1	'15.9.8	“	12	0	12
4	이○○	◎◇길00	1	'15.9.23	“	12	0	12
소계								42
5	김○○	◎○로 000	2	'16.3.4	'16. 4. 1 '16.10.17	24 18	18 9	12
6	송○○	◎○로 000	2		'16.10.17	18	9	9
7	윤○○	원◎○길 00	2		“	18	9	9
8	송○○	월★●지2길	2		“	18	9	9
9	김○○	◆◎길 00	2		“	18	9	9
소계								48

[처분지시]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지급시 수급자 현황 및 대상자 거주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배부하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동화면	2017	시 정			

제목 :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위법·부당 내역]

- 동화면에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의 소득증대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르면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3년, 2016년에 동화면 ■㉠로 000-16 조○
 ○ 외 38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9건)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지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사업명, 보조사업자 주소, 사업 대상지, 사업비, 연락처, 시설 및 기계장비 설치사진, 관리상태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사진, 연락처, 사업명 등이 누락되어 관리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일부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현황

지원연도	사업명	대상자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5개 사업	39명		212,006	106,003	106,003	
2016	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	고○○ 외 12	13대	26,910	13,455	13,455	기계
2013	다목적소형하우스지원사업	조○○	66㎡	1,000	500	500	시설
2013	다목적소형하우스지원사업	김○○	66㎡	1,100	550	550	시설
2013	원예관정지원(소형)	김○○	1공	2,200	1,100	1,100	시설
2013	원예관정지원(소형)	최○○	1공	2,200	1,100	1,100	시설
2013	원예관정지원(중형)	임○○	1공	6,000	3,000	3,000	시설
2013	원예관정지원(중형)	차○○	1공	6,000	3,000	3,00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주○○	5,000㎡	33,988	16,994	16,994	시설
2013	신규과원조성사업	차○○	4,000㎡	22,960	11,480	11,480	시설
2013	다목적소형하우스지원사업	이○○	33㎡	1,500	750	750	시설
2013	다목적소형하우스지원사업	나○○	33㎡	2,000	1,000	1,00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임○○	2,880㎡	7,600	3,800	3,80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박○○	6,570㎡	6,460	3,230	3,23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박○○	2,500㎡	5,890	2,945	2,945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김○○	880㎡	6,724	3,362	3,362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오○○	10,000㎡	11,658	5,829	5,829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곽○○	6,000㎡	5,178	2,589	2,589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조○○	5,000㎡	9,900	4,950	4,95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이○○	3,000㎡	5,940	2,970	2,97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오○○	10,000㎡	8,700	4,350	4,35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신○○	1,980㎡	1,440	720	72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김○○	6,000㎡	6,600	3,300	3,30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곽○○	4,000㎡	7,920	3,960	3,96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최○○	1공	8,000	4,000	4,00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이○○	9,000㎡	9,660	4,830	4,830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김○○	9,000㎡	4,478	2,239	2,239	시설
201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김○○	9,000㎡	9,104	4,552	4,552	시설

[처분지시]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3천만원 미만의 기계장비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동화면	2017	시 정	회 수	42,120	

제목 : 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동화면에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발농업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었다.
-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표1】과 같이 동화면 ▲☆●◆길 61 이○○외 2인이 신청한 농지전용신고 3건에 대하여 전용된 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발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농지전용 필지 직불제 지급 부당

신청인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m ²)	전용면적(m ²)	전용목적	직불금수령		회수액	비고
								연도	금액		
계	3명				3,340	856			42,120	42,120	
이○○	● 동화면 ○ ☆◆길 ○○	●◎	000-2	전	1,531	197	농업용 창고	2015	7,880	15,760	
								2016	7,880		
동○○리 ○○회	동○○리 ○○회	○●	000-31	전	1,358	208	마을회관	2016	8,320	8,320	
박○○	○ 황룡면 ◎◆길○○	◇◆	000-4	전	451	451	농업용 창고	2016	18,040	18,040	

[처분지시]

① 농지전용 신고필지에 대해 지급된 발농업직접지불금 42,12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문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동화면	2017	주 의			주 의

제목 : 민원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27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 1건에 대해 지연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변경이력을 수정한 15건 모두 기한 내 처리한 것처럼 보이나 처리공문 확인결과 그중 5건은 처리기간을 하루씩 도과하여 지연 처리하였다.

-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건은 결재 문서없이 완료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등 11건에 대해서는 결재 진행 중 실제 처리한 것으로 완료 처리하였으며, 그 중 3건은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사실상 지연처리 하는 등 민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민원 처리 부적정 현황

민원인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기한	수정일자 (처리일자)	부적정내용
계					18건
오○○	2015.5.8	전입신고	2015.5.8	2015.5.11	지연처리
박○○	2016.9.13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2016.9.21	2016.9.21. (2016.9.22)	민원처리 날짜수정 (사실상 지연처리 → 기한내 처리로 수정)
동○○업	2016.10.1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6.10.14	2016.10.14. (2016.10.17)	
동○○업	2016.10.1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6.10.14	2016.10.14. (2016.10.17)	
김○○	2016.10.2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6.10.31	2016.10.31 (2016.11.1)	
박○○	2016.4.5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	2016.4.5	2016.4.5. (2016.4.6)	
문○○	2015.5.1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5.5.12	2015.5.12	결재문서없이 처리
조○○	2015.5.2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2015.5.27	2015.5.26. (2015.5.27.)	결재 진행중 완료처리 (3건 지연처리)
조○○	2015.5.2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5.5.27	2015.5.26. (2015.5.27.)	
나○○	2015.5.2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5.5.27	2015.5.26. (2015.5.27.)	
박○○	2015.6.1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2015.6.12	2015.6.11. (2015.6.12.)	
원○○	2015.10.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2015.10.6	2015.10.5. (2015.10.6.)	
박○○	2016.4.5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	2016.4.5	2016.4.5. (2016.4.6.)	
남○○	2016.4.18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	2016.4.19	2016.4.18. (2016.4.19.)	
조○○	2016.10.1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6.10.13	2016.10.13. (2016.10.14.)	
조○○	2016.10.13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2016.10.13	2016.10.13. (2016.10.14.)	
곽○○	2017.2.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7.2.8	2017.2.7. (2017.2.8.)	
곽○○	2017.2.2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017.2.23	2017.2.22. (2017.2.23.)	

[처분지시]

① 민원이 접수된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결재를 득한 후 처리기간 내에 완료 처리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